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37 발의연월일: 2024. 10. 23.

발 의 자:김형동・박정하・우재준

서범수 · 김소희 · 권영진

한지아 · 김위상 · 조지연

서일준 · 강대식 · 박덕흠

서지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재산세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 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고령화된 농업인구 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
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	
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	
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	
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u>2024년 12월 31</u>	<u>2028년 12월 31</u>
<u>일</u> 까지 감면한다.	<u>일</u>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